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시정을 구하는

진정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미얀마 군부 소유의 대기업 MEHL 과 한국 기업의 연계에 관한 사항

2020년 11월

본 진정에 대한 기본정보

1. 진정인

아래는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미얀마에게 정의를(Justice for Myanmar)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진정입니다.

●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본 모임은 대한민국 내 로힝야 인권 실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이슈에 대한 옹호운동을 펼치기 위해 결성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참여단체로 사단법인 아디, 국제민주연대, 예수회인권연구센터, 천주교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JPIC,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신대승네트워크, 해외주민운동연대 등이 있습니다.

- 연락처: 김기남, kn.kim@adians.net

●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본 네트워크는 초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합입니다. 참여단체는 공익법센터 어필, 좋은기업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노총, 국제민주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환경운동연합 등이 있습니다.

- 연락처 : 나현필, khis21@hanmail.net

● 미얀마에 정의를

본 단체는 미얀마 내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폭력, 전쟁 범죄 그리고 반인도적 범죄들의 구조적 원인을 밝혀냄으로써 모든 미얀마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는 활동가들이 모여 결성한 비공개 단체입니다.

- 연락처: Yadanar Maung, partners@justiceformyanmar.org

2. 가해자 및 관련자들

다음은 MEHL 및 미얀마 군부와 연루되어 미얀마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제인권법상 의무가 있는 주체들입니다.

● 포스코

1968 년에 설립된 포스코는 시장 가치로 세계 최고의 철강기업 중 하나로 대한민국의 기업입니다. 포스코는 52 개국에 164 개의 해외 자회사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두 개가 미얀마의 MEHL 과 합작사업관계에 있습니다.

● 이노그룹

이노그룹은 1991 년 설립되어 지난 14 년간 미얀마에서 사업을 진행해온 대한민국의 기업입니다. 미얀마 내 MEHL 과 합작하는 3 개의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태평양 물산

1972 년에 설립된 태평양물산은 전세계의 주요 브랜드에 생산품을 수출하는 대한민국의 의류제조기업입니다. 미얀마 내 MEHL 과 합작한 하나의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롯데기업

1967 년 설립된 롯데기업과 1973 년에 설립된 롯데 호텔은 미얀마 군부로부터 토지를 임대한 양곤의 롯데 호텔을 운영하고 자본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선조선

1945년에 설립된 대선조선은 대한민국의 조선기업으로서 국가 소유의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분의 83.03%를 보유하여 대주주입니다.¹

배 경

1. 미얀마

미얀마는 1962년부터 군부 독재 정권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탃마도(Tatmadaw)라고 알려진 군부는 2010년 부정선거를 통해 그들이 지지하는 새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전환은 직접적인 군부의 독재통치에서 군부가 권력과 특권을 유지하는 한계가 명확한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2015년 선거에서 전국민주연맹(이하 NLD)이 압승을 거두면서 미얀마와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정상화 되었습니다.

군부가 2008년에 제정한 헌법에 따라 NLD는 군부와 권력을 나눌 수 밖에 없고 매우 제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부는 민주적인 감시로부터도 면제된 채 경찰, 치안, 교도소, 국경 업무 등 주요 분야를 장악하며 사법부와 정부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군부는 국회 의석의 25%를 보장받는데, 이것은 현행 헌법을 더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군부가 거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군부는 민간 정부의 통제력 위에 군림하며 오늘날까지 면책권을 부여받으며 심각한 인권 유린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국제법 위반이며, 대량학살,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1982년 시민권법 하에서 인종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는 차별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2008년 헌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² 1982년 시민권법에 따르면 미얀마 국민은 카친, 카야, 카렌, 친, 바마, 몬, 라카인, 산족과 영구적인 거주지로서 미얀마 영토내에 정착한 다른 소수민족만을 제한적으로 정의됩니다.³ 이러한 분류는 로힝야족, 중국계, 인도계, 네팔계 소수민족들에 대한 배제로 이어져 시민으로서의 자격 박탈과 기본적 권리에 대한 보호와 접근성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1

https://www.koreaexim.go.kr/site/inc/file/fileDownload?dirname=/board/62&filename=202005221736371583357063083.pdf&orinalname=KOREA_EXIMBANK_Annual_Report_2019.pdf

²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Myanmar 2008, Chapter 8:
<<https://www.wipo.int/edocs/lexdocs/laws/en/mm/mm009en.pdf>>

³ Burma Citizenship Law, 15 October 1982, available at: <https://www.refworld.org/docid/3ae6b4f71b.html>
[accessed 4 November 2020]

2017년 8월, 군부가 일명 ‘토벌 작전’을 통해 수천 명을 살해하고 90만 명이 넘는 로힝야 소수민족이 방글라데시로 국경을 넘어 피난하게 됨에 따라 군부가 저질러온 범죄의 실상은 명백히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분석한 위성 사진에 따르면 약 288개의 마을이 군사 작전 중에 일부 또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⁴ 2019년 유엔 미얀마 국제진상조사단(FFM)이 발표한 최종 보고서는 로힝야족 60만 명이 미얀마 라카인 주에서 여전히 “학살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⁵

계속되는 국제 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정부는 제도적인 박해와 폭력, 무국적 문제, 계속되는 군부 면책을 포함한 이 위기상황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을 꺼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도자 아웅산 수치와 그의 민간 정부는 인권 침해에 대한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것을 거듭 거부하였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는 미얀마 정부의 제노사이드 혐의에 대해 주도적으로 방어했습니다.

2. MEHL 과 미얀마 군부

미얀마 군부 권력의 핵심은 미얀마경제지주회사(이하, MEHL)로서 그 소유권의 대부분이 군부대와 전현직 군인에게 있습니다. MEHL은 1990년 군부가 설립하였고, 오늘날까지 의류 생산, 옥광업, 제조업, 관광업 등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복합형 대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유엔 미얀마 독립국제진상조사단(FFM, 이하 진상조사단)은 MEHL과 군의 유착관계에 초점을 둔 군부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MEHL과 같이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의 수익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수익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해 온 미얀마 군부의 운영비로 쓰인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⁶ 진상조사단은 군 소유의 대기업 운영 외에도 토지 임대료 부과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2016년 이후 미얀마 군부에 무기 및 이중 사용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을 집중 조명하며 “무기의 이전은 미얀마의 인권 상황에 직접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 9월 MEHL과 군부와의 관계를 조명하는 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출 문서 1건과 공개 문서 1건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MEHL이 2020년 1월 미얀마 투자회사 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Company Administration)에 제출한 서류인데, MEHL은 모두 복역 중이거나 퇴직한 개인 주주들 381,636명과 이 외 기관 주주 1,803곳이 소유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⁷

⁴[Human Rights Watch, Burma: new satellite images confirm mass destruction, October 17 2017:](https://www.hrw.org/news/2017/10/17/burma-new-satellite-images-confirm-mass-destruction)
<<https://www.hrw.org/news/2017/10/17/burma-new-satellite-images-confirm-mass-destruction>>

⁵ OHCHR, *Myanmar’s Rohingya Persecuted, Living under Threat of Genocide, UN Expert Say*, 16 September 2019: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4991&LangID=E>>

⁶ A/HRC/42/CRP.3

⁷ Amnesty International, *Military Ltd: the company financing abuses in Myanmar*, 2020:
<<https://www.amnesty.org/download/Documents/ASA1629692020ENGLISH.PDF>>

두 번째 문서는 2010~11 년의 MEHL 주주 보고서(기밀)의 사본으로, MEHL 주주의 신원에 대한 정보 및 1990~2011 년 동안 주주들이 받은 연간 배당금의 지급액이 담겨 있습니다. 20 년 동안 모든 주주들이 지급받은 배당금 총액은 공식 환율로 계산할 때 약 180 억 달러에 달하고, 이 중 MEHL 은 약 160 억 달러(약 16 조 원)를 군 부대로 이체하였습니다.⁸

MEHL 의 주주 목록에는 국제법상의 범죄와 다른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서부사령부(Western Command)와 같은 군부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부사령부는 인종 청소의 대부분이 발생한 라카인 주(2016~2017 년)와 북부 산 주(2018~2019 년)에서 군사작전을 총괄했습니다.⁹

앞서 언급된 2010~11 년 주주 보고서에 따르면 서부사령부 산하 95 개 군부대들이 MEHL 의 주주(배당을 받는 곳)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MEHL 과 미얀마군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침해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MEHL 과 연계된 한국 기업

1. 개요

미얀마 군부와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조직들은 외국 기업과 자주 협력합니다. 대부분 해외 파트너사와 MEHL 가 미얀마에 등록된 사업체의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합작투자의 형태입니다. MEHL 은 또한 현지 기업의 지분을 공식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특정 비율의 수익을 받는 이익분배계약을 통해 외국 회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0 년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위의 두 경우에 해외 파트너들은 일반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MEHL 은 미얀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기업 중 하나로서 MEHL 의 지위와 연계되어 있는 파트너십에 특정 혜택을 제공합니다.

2019 년 유엔 진상조사단은 MEHL 을 포함하여 군부가 연루된 외국 기업의 기업 활동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위반에 관련되거나 혹은 그에 기여할 위험이 높고 “최소한 이러한 외국 회사들은 군부의 재정능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규정합니다.¹⁰ 중요한 점은, 조사단이 군부와 MEHL 과 같은 군부 소유의 기업들과 연루된 외국 기업이 “(이)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를 고려하여 해당 기업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 책임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고 진술한 것입니다.¹¹

⁸ Amnesty International, *Military Ltd: the company financing abuses in Myanmar*, 2020: <<https://www.amnesty.org/download/Documents/ASA1629692020ENGLISH.PDF>>

⁹ Asian Dignity Initiative, 20 Village Genocide reports, 2018-19, available at <https://www.adians.net/blank-6>

¹⁰ A/HRC/42/CRP.2, para. 5

¹¹ A/HRC/42/CRP.2, para. 146

2019년 유엔 진상조사단은 최소한 열네개의 합작투자 회사와 마흔네개의 외국 기업이 군부의 사업 활동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고합니다. 해당 보고와 더불어 2020년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의해 군부와 MEHL의 연관성 뿐만 아니라 MEHL과 합작 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다루고 있는지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가 드러났습니다.

2. MEHL과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대한민국 기업들

본 사안이 세계적인 규모의 이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본 진정서는 특별히 대한민국의 기업들과 그들의 MEHL과의 관련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MEHL과 사업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 **포스코**는 세계 최대 철강회사 중 하나로 MEHL과 두 개의 합작법인인 미얀마 포스코 C&C사(포스코 지분 70%)와 미얀마 포스코제철소(포스코 지분 70%)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양곤에 위치한 롯데호텔(포스코인터내셔널 55.47%, 포스코건설 26.03%)의 개발자 겸 대주주다.¹² 호텔은 군부 소유의 땅에 70년간 계약 시공 및 운영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BOT)으로 건설되었습니다.¹³

국민연금은 포스코의 최대주주로 2020년 6월 현재 포스코의 12.1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¹⁴ 포스코는 국민연금의 6대 투자처입니다.¹⁵ 포스코의 최대 외국인 주주는 2020년 6월 현재 포스코의 5.23%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본사를 둔 블랙록 어드바이저스(BlackRock Advisors)입니다.¹⁶

포스코는 국제앰네스티의 질의서에 대해 기업이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의 사용을 감시하거나 검증할 방법이 없으며, 2017년 이후 MEHL에 어떠한 배당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로힝야와 연대하는 시민사회대응모임 및 기업과인권네트워크가 포스코에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2020. 11. 12.)에서도 “MEHL 측이 배당금을 인권침해 행위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국제앰네스티의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나오면 MEHL에 배당금 지급 지급을 보류하고 심각한 경우 합작관계의 변경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¹² <https://www.frontiermyanmar.net/en/lotte-yangon-hotel-opens-at-site-overlooking-inya-lake/>

¹³ https://www.poscoenc.com:446/eng/pr/press_release_view.asp?hDOC_ID=293

¹⁴ <http://www.posco.com/homepage/docs/eng6/jsp/irinfo/stock/s91b4000199c.jsp>

¹⁵ https://fund.nps.or.kr/jsppage/fund/mcs_e/mcs_e_04_01_01.jsp

¹⁶ <http://www.posco.com/homepage/docs/eng6/jsp/irinfo/stock/s91b4000199c.jsp>

포스코의 답변은 MEHL 의 배당금을 받는 서부사령부(West Command)와 그 예하 부대들이 2016.부터 라카인주에서 로힝야족을 집단학살해 왔다는 유엔과 그 산하 인권기구, 그리고 국제인권단체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MEHL 의 답변만을 그대로 인용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 **이노그룹**은 미얀마에서 10 년 이상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 미얀마 이노국제그룹(이노 지분 44%), 미얀마 이노라인컴퍼니(이노 지분 61%), 한타웨디 골프·컨트리클럽(이노 지분 37%) 등 미얀마에서 MEHL 과 여러 개의 합작벤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노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이노포장주식회사는 MEHL 이 소유하고 있는 피인마빈 산업단지의 공간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노그룹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연락에서 자사의 합작회사가 아직 어떠한 이익도 창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MEHL 에 어떠한 배당도 지불하지 않았고 따라서 군부와의 연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로힝야와 연대하는 시민사회대응모임 및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2020. 10. 13. 공동으로 회사의 공식입장과 추후조치에 대해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나 이노그룹은 지금까지 이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 **주식회사 태평양물산**은 의류, 침구류, 식품 등을 전세계 주요 브랜드에 수출합니다. 현재 이 법인은 Myanmar Wise-Pacific Apparel Yangon Company Ltd(태평양물산 지분 55%)라는 합작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평양물산의 자회사인 Myanmar Wise-Pacific Apparel Bago Co Ltd 는 MEHL 이 소유한 Inndagaw Industrial Zone 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평양물산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연락에서 지난 3 년간 MEHL 소유의 토지를 임대하기 위해 지불한 수수료 외에 MEHL 에 매년 평균 7 만 5 천 달러를 배당금을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물산은 또 MEHL 과의 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2020 년 9 월까지 그들의 합작회사에서 MEHL 의 지분을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아직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태평양물산이 MEHL 의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MEHL 은 토지 임대를 통해 직간접적인 이익을 계속 얻을 것입니다.

로힝야와 연대하는 시민사회대응모임 및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2020. 10. 13. 공동으로 회사의 공식입장과 추후조치에 대해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나 태평양물산은 지금까지 이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 **롯데 기업**은 식품, 소매, 관광, 금융, 화학, 제조업 분야의 주요 대기업입니다. 롯데는 양곤의 군부 소유 토지에 호텔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18.49%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텔은 건설-운영-이전(BOT) 방식으로 건설되었습니다.
- **대선조선**은 선박제조업체로서 상륙수송선거함(Landing Platform Docks, 이하 LPD)을 제조하여 미얀마 군부에 판매하였고, 미얀마 해군이 2019년 12월 24일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제인스에 따르면,¹⁷ 이 LPD는 122미터 길이이며 밀 미-17 헬리콥터 2대와 250명의 병력과 15대의 차량을 수송할 수 있는 것으로 미얀마 해군이 보유한 군축함으로는 최대규모입니다. 이 LPD는 2019년 7월 부산을 출발하였고 대한민국이 협약국인 무기거래조약상의 군축함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선조선의 지분 83.03%를 보유한 최대주주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1976년에 설립되어 국제교역과 투자를 지원해 왔고 대한민국 정부가 66.4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주로는 한국은행(9.81%)과 한국산업은행(23.76%)이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경제개발협력기금과 남북협력기금의 수탁자입니다.¹⁸

국제규범에 따른 기업의 의무

국제법은 국민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규칙, 규범 및 표준을 이룹니다. 이는 인권, 교역, 전쟁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국가들을 규율하는 공통적 규범을 수립합니다.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국제법에 기업이 그들의 국제 위법행위에 책임을 진다는 일반 규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법상 기준은 여러 상황에서 개인 및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국내법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1. 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은 국가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토내에 혹은 관할권 하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무는 국가 행위자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구하며, 기업의 행위들도 인권 침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러한 인권 보호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규정에 따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규정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적용될 것을 보장합니다.

¹⁷ <https://www.janes.com/defence-equipment-intelligence/update-myanmar-navy-commissions-its-first-lpd-amphibious-assault-ship/>

¹⁸

https://www.koreaexim.go.kr/site/inc/file/fileDownload?dirname=/board/62&filename=202005221736371583357063083.pdf&orinalname=KOREA_EXIMBANK_Annual_Report_2019.pdf

2. 국제인도법

국제인도법은 무력 분쟁의 효과를 제한하고자 하는 일련의 규칙으로,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거나 더 이상 가담하지 않는 이들을 보호하고 전투의 수단과 방법을 제한합니다. 제네바 협약과 그 추가의정서의 당사국들은 국제인도법과 그 규정들을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인도법은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인권 실사에 착수할 때, 특히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단체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3. 무기거래조약

무기거래조약은 군함을 포함한 재래식 무기의 거래를 제한하고 수출입 평가를 의무화합니다.¹⁹ 해당 조약은 무기가 집단학살,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의 자행과 제네바 협정의 중대한 위반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경우 그 무기의 수출을 금지합니다.²⁰ 국가의 국가 무기통제 의무에 따르면 국가는 독자적으로 무기가 분쟁에 기여하고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을 촉진할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²¹

4. 기업의 책임을 위한 자발적 기준

기업들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을 경성법의 부재 속에서 여러 자발적인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a)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s)은 단언컨대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은 비록 자발적인 기준이지만 국제인권장전으로 일컬어지는 국제인권법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공동체에서의 국가들의 약속을 강화합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은 국가로 하여금 “영토 및/또는 관할권내에서 기업을 포함한 제 3 자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도록 지시하며, “효과적인 정책, 법률, 규정, 판결을 통하여 예방, 조사, 처벌, 시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합니다.²² 또한 국가는 “해당 영토 및/또는 관할권에 소재한 모든 기업들이 사업 운영에 있어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기대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합니다.²³

¹⁹ Arms Trade Treaty 2.1 and 4

²⁰ Arms Trade Treaty 6.3

²¹ Arms Trade Treaty 7

²²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Principle 1

²³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Principle 2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르면, 기업도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원칙에 따라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기업은 자신들의 활동으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은 인권침해의 소지들을 식별하고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해서 상세한 평가와 조사(due diligence)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경영에 통합되어 공개되고 소통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이해관계자들과의 의미 있는 협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²⁴

(b)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국제 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 선언’의 부속 문서이며 초국가적 기업을 위한 사회책임경영의 (자발적) 기준을 제공하는 권고사항입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기업 윤리와 관련하여 여러 분야를 다루는데, 이는, 예를 들어, 인권과 환경을 포함합니다. 가입국은 국내에서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책임지는 국내연락사무소를 설립해야 합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즉,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기업이 연관된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해야 한다.
2. 기업 활동 중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아야 하며,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해결해야 한다.
3. 부정적 영향에 기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즈니스 관계를 통해 당해 기업의 사업 운영, 제품, 및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4. 인권존중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가져야 한다.
5. 기업의 규모, 성격, 운영 상황과 인권의 부정적 영향이라는 리스크의 심각성에 따라 인권 실사를 실시한다.
6.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부정적 인권 영향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거나, 구제를 위해서 합법적 절차를 통해 협력해야 한다.

특히 인권 실사와 관련하여,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국가는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기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기업이 운영되는 국가의 국제적 인권에 관한 의무, 관련 국내 법규의 틀 안에서, 기업의 규모, 성격, 운영 상황과 인권의 부정적 영향이라는 리스크의 심각성에 따라 인권 실사를 실시해야 합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해설은 “인권 실사과정에는 인권에 대한 실제적,

²⁴ 나현필, 한국에서의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의 적용 가능성, 공익과 인권 통권 제 14 호 2014, p.185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측정 결과의 반영과 해당 결과에 따른 조치, 조치에 대한 반응 파악, 해당 영향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관한 의사소통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c) 유엔 글로벌 콤팩트:

유엔 글로벌 콤팩트는 구속력이 없는 유엔 협약으로 전세계의 기업들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사회적 책임 정책을 채택하고 그 정책의 이행을 보고하도록 촉구합니다. 콤팩트는 원칙에 기반한 규범으로서, 인권, 노동, 환경, 부정부패 방지 등에 대한 10 가지 원칙을 명시합니다.

피진정 기업들의 위반 및 미준수

1. 국제기준 위반

기업은 국내법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준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기업들은 갈등이 지속되고 거버넌스가 취약한 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법이 국제인권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들 기업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같은) 자발적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포스코는 미얀마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후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자회사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가 없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한국 기업들은 MEHL 및 미얀마 군부가 통제하는 다른 단체와의 사업 관계 속에서 그들이 운영하거나, 생산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초래하는 인권의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키는 것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례에서 포스코, 이노그룹, 태평양물산은 그들의 공급망을 적절히 감독하지 않아 미얀마에서의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인권에의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것에 대한 효과적인 책임을 지는 데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9 년 유엔 진상조사단이 지적한 바와 같이, MEHL 과의 모든 사업 관계는 단절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태평양물산은 MEHL 과의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종료되었는지의 증거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인권 공약 불충분

기업의 행동강령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그들의 인권 의무를 전달할 필요도 있습니다. 세부사항의 수준은 매우 다양합니다. 포스코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유엔 글로벌 콤팩트, OECD 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그들이 고수하는 이니셔티브로 언급하면서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태평양물산은 '윤리경영의 가치'를 언급할 뿐, 무엇이 윤리경영인지에 대해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인권 실사 불투명

효율적이고 의미있는 인권실사는 기업들이 잠재적 그리고 실질적인 인권에의 부정적인 영향을 기업이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식별하고, 완화하고 책임지는 기업활동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태평양물산은 국제엠네스티와의 연락에서, 그의 자회사인 와이즈퍼시픽이 제 3 자의 감사(Betterwork, BSCI and SMETA)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는 기업들의 웹사이트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는 기업활동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인권실사를 실시할수 있다고 답변하였지만, 그것은 포스코의 재량에 달린 문제입니다.

(a) 인권영향평가 불분명

기업들이 미얀마에서 활동 중이거나 활동 전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는지가 불분명합니다. 태평양물산은 국제엠네스티와의 연락에서 2012 년 MEHL 와 관계를 맺기 전에 어떤 인권실사를 수행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재무적 보고에 관한 국제 및 국내 지침의 일반적인 부재 때문에 이와 같은 주요 기업들이 투명하지 않고 하향식의 조사, 아니면 간단하게 하고 말거나, 수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영향평가는 내부와 독립적인 외부의 인권전문가가 같이 혹은 별도로 수행하는 걸 기반으로 하여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집단(소수자 등)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의미 있는 협의를 포함해야 합니다.

(b) 고충처리장치 부재

마지막으로, 인권에 대한 실질적인 부정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기업 운영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이 실제 작동하는 고충 처리 메커니즘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충처리장치가 없거나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MEHL 과 미얀마 군부 사이의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위의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 군 재벌과 사업을 하거나 기업 관계를 맺음으로써 현재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유린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포스코, 이노그룹, 태평양물산 등 한국 기업들은 MEHL 의 계속되는 인권 침해와의 연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군 재벌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초국적 기업들에게도 필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NCP 요구사항

우리는 NCP 한국사무소에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피진정기업들이 유엔 및 국제사법절차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금도 진행중인)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우려의 가해집단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 미얀마 군부 및 군부가 운영하고 있는 MEHL 과의 사업적 합작관계를 시급히 종료하지 않는 것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및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진정기업들이 MEHL 과의 사업적 관계를 종료할 것을 권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